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등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44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21664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인증취소 근거 마련(안 제15조 등)	3
2.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치 추가 (안 제39조)	11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21664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2. 6.
3. 회 부 일 : 2026. 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
령 및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
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
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안 제15조 등)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 ----- ----- -----.

현행	개정안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소비자의 성명·이메일이 3,367만여 건 유출, 배송지 목록(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1.4억여 회 조회되는 등¹⁾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6.2.10.

특히 택배업과 배달업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결제정보 등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택배서비스 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더욱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택배서비스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하는 등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²⁾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조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³⁾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택배 운송장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2025.9.10. 의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 정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재조치에 더하여 현행법상 등록·인증 취소라는 제재수단을 병행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보 보호 조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21145호, 2026.3.10. 일부개정)으로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였으며,⁶⁾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⁷⁾ 결과 공표제도⁸⁾를

6)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 일부개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통해 시정조치를 받은 자에게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 타 법상의 행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또는 인증취소라는 중한 제재를 추가하는 것이 이중적인 제재로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관련 자료·조사의 기피¹⁰⁾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반의 경중이나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이라는 사유만으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측면이 없는지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위반까지 등록 또는 인증취소로 연결될 수 있어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타법에서 추가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누적 제재 및 비례원칙 위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이해관계자 의견

택배	통합 물류 협회	A사업자	○ 개인정보 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양 법률간 보호 법익과 규율 대상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족함에도, 타법상의 행정 의무 위반 을 이유로 사업 등록 취소라는 치명적 제재를 중복하는 것은 과잉제재
		B사업자	○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을 일률적으로 등록·인증 취소 사유로 규정할 경우 경미한 위반까지 영업취소로 연결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 가 있음
		C사업자	○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 수준을 감안하면 사업자 등록 취소는 이중 규제이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며, 제재로 인한 부작용이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아 개정 에 따른 기대 이익 보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 더 많이 소요 예상
		D사업자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재 외 별도로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제재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이중 제재, 중복 적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등 명확화 필요

소화물 배송	통합형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 공동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 추가로 규정 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 로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한국온라인쇼핑 협회	○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시정조치 명령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이며, 이에 따른 처벌규정도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해당 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적 처벌 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2.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치 추가(안 제39조)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소화물배송대행인증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u> 6.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 제3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확보, 소비자 편의 도모 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고,

개선명령 또는 권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이 포함되어 있음.¹¹⁾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

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4. 서비스약관의 변경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